



## 학력서류 안내

대한민국 교육부 및 법무부 규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대학에서 어학연수 또는 유학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국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**학력입증 서류**를 제출해야 **비자 취득 또는 체류자격 변경**이 가능합니다.

### 1. 중국 교육기관 학력 소지자

#### (1) 인문계 고교졸업자: 아래 중 택일

- ① 高考성적표 및 졸업증명서(해당 학교장 발행)
- ② 会考합격증서 또는 会考성적표(교육부 인증) 및 졸업증명서(해당 학교장 발행)
- ③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인증을 받은 졸업증명서

\* 졸업예정자: 졸업증명서 대신 해당 학교장이 발행한 성적증명서 제출

#### (2) 실업계 고교졸업자: 졸업증명서(교육부 인증) 제출

#### (3)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: 중국 교육부 학위인증센터가 발행한 학력·학위 인증보고서 원본

#### \*교육부 학력·학위 인증방법

- ① 학력인증: 중국 전국 고등교육학생정보자문 및 취업지도센터(교육부 학력인증센터, [www.chsi.com.cn](http://www.chsi.com.cn))
  - ② 학위인증: 중국 학위 및 연구생 교육발전중심(교육부 학위인증센터, [www.cdgd.edu.cn](http://www.cdgd.edu.cn))
  - ③ 국내 지정 업무대리기관: 유웨이차이나, [www.cdgd.or.kr](http://www.cdgd.or.kr) (문의: 02-723-3217)
- ※ ① ~ ③ 모든 인증서 발급 약 30일 소요

### 2. 아래 20 개 국가 교육기관 학력 소지자: ①, ② 중 택일

가나, 나이지리아, 네팔, 몽골, 미얀마, 방글라데시, 베트남, 스리랑카, 우즈베키스탄, 우크라이나, 이란, 이집트, 인도, 인도네시아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태국, 파키스탄, 페루, 필리핀

- ① \*아포스티유(Apostille) 확인을 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
- ② 주재국 한국영사 또는 주한 자국공관 영사 확인을 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

#### \*아포스티유(Apostille)란?

- ✓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
- ✓ 외국에서 발행한 문서를 인정받기 위해 확인을 받는 것을 아포스티유 확인이라 함
- ✓ 아포스티유 부착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게 됨

### 3. 기타 국가(일본, 대만, 홍콩, 마카오 등)의 교육기관 학력소지자

: 졸업 및 성적증명 사본 제출